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38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7.

발 의 자:김미애·서정숙·서범수

양금희 • 이종성 • 김용판

하영제 · 이채익 · 박덕흠

조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수행하고 있으나,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.

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 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,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). 법률 제 호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	제3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
	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건
	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
	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
	<u>있다.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